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2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 ‘청년친화도시’ 조항의 신설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 청년들의 역량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(안 제3조 및 제4조)
-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 및 제6조)
-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7조)

- 정책연구 및 비용 등 지원(안 제8조 및 제9조)
-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, 교육 및 홍보(안 제10조 및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,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
- 동 제정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- 안 제2조에서는 청년, 청년친화도시, 청년정책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
 - 안 제3조에서는 ‘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, 청년 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·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’라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,
 -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내용에 대하여
 -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
 - 안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
 - 안 제8조에서는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
 - 안 제9조에서는 각종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에 대하여

-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에 대하여
- 안 제11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관련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청년친화도시 관련 법령 개정현황을 살펴보면, 최근 「청년 기본법」 개정(2023.3.21.개정, 2023.9.22.시행)으로 24조의6¹⁾(청년친화도시) 조항이 신설되었고
- 참고로 서울시와 성북구 및 노원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2024. 8. 23(금) 국무조정실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, 청년 발전,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‘청년친화도시’로 지정·지원하기 위해 첫 번째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“2024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”을 공고하였음.
- 청년친화도시는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에 근거하여, 청년친화적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행·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,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, 지정단위는 특별자치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임.
- 청년친화도시는 2024년부터 매년 3~5개 지역을 지정하여 2028년까지 25개 내외 지역을 지정할 계획임.
- 이번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은 청년친화도

1) 제24조의6(청년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, 청년발전,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,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3. 21.]

시 조성 원칙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, 청년친화도 평가, 제도 개선 등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,
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